

# 대리점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은행사용란 메모 : 심사역은 가맹점이 제출한 “대리점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및 대리점카드 업무약관(간인 필요)”의 사본이 가맹점앞 교부되었음을 확인토록 합니다.	담당자	책임자	심사역

## 1. 가맹점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한 글	한 글		
영 문	영 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주소 □□□□□			
E-mail 주소			
전화번호 ( ) -	담당자명	전 화 ( ) -	
팩스번호 ( ) -		휴대폰 ( ) -	

## 2. 대리점 카드의 이용

최 대 매 입 금 액	(한글로 기재) _____ 원											
매 입 최 장 기 일	① 일시불 결제 : “가맹점”의 매출대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최대 _____일 이내 ② 첫 할부금 결제 (회원의 할부거래 허용시) : “가맹점”의 매출대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최대 _____일 이내											
가맹점 계좌번호	(한국씨티은행) _____ (예금주 : )											
선 지 급 수 수 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 산 식</th> <th>부담 주체</th> </tr> </thead> <tbody> <tr> <td>선지급수수료</td> <td>= 매출청구금액 * 적용금리 * 신용공여기간 ÷ 365</td> <td>- 신용공여기간 =회월결제일-대금지급일 -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td> </tr> <tr> <td>적 용 금 리</td> <td>CD수익률(*) + 연 ____%</td> <td>* CD 수익률에 대한 설명은 &lt;참고&gt; “3. CD 수익률” 내용 참조</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산 식	부담 주체	선지급수수료	= 매출청구금액 * 적용금리 * 신용공여기간 ÷ 365	- 신용공여기간 =회월결제일-대금지급일 -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적 용 금 리	CD수익률(*) + 연 ____%	* CD 수익률에 대한 설명은 <참고> “3. CD 수익률” 내용 참조		
구 분	계 산 식	부담 주체										
선지급수수료	= 매출청구금액 * 적용금리 * 신용공여기간 ÷ 365	- 신용공여기간 =회월결제일-대금지급일 -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적 용 금 리	CD수익률(*) + 연 ____%	* CD 수익률에 대한 설명은 <참고> “3. CD 수익률” 내용 참조										
취 급 수 수 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 산 식</th> <th>부담 주체</th> </tr> </thead> <tbody> <tr> <td>취급수수료</td> <td>거래건별 _____원</td> <td>( ) 가맹점 ( ) 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산 식	부담 주체	취급수수료	거래건별 _____원	( ) 가맹점 ( ) 회원	*가맹점앞 선지급 미발생시, 만기결제대금 회수서비스에 대해 징구하는 수수료임.				
구 분	계 산 식	부담 주체										
취급수수료	거래건별 _____원	( ) 가맹점 ( ) 회원										

최대 할부개월수	_____개월				
할부수수료율 (단, 첫 할부 결제일의 할부수수료는 면제)	할부기간	1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 18개월 이하	18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수수료율	연 _____ %	연 _____ %	연 _____ %	연 _____ %
최대 무이자할부기간	_____개월				
연체수수료율	연 _____ % (회원의 결제대금연체시 적용)				
반환연체수수료율	“가맹점”이 대금의 반환기일을 초과하여 당행앞 반환하는 경우로 회원의 연체수수료율과 동일.				
반환준비금 적립율	매입 건별 금액의 _____ %				



## 대리점카드 업무약관

###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판매기업 : “판매기업”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주)한국씨티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리점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2. 구매기업 : “판매기업”이 추천하는 사업주 또는 법인성격의 대리점 또는 거래처로서 “은행”과 대리점카드 회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카드 : “구매기업”의 상품구매 및 구매대금결제를 위하여 “은행”이 발급한 구매대금 결제전용 신용카드를 말한다.

### 제 2 조 (가맹점 가입)

1. “판매기업”은 “은행”이 정한 대리점카드 업무약관 및 가맹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대리점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의해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다.
2. 본 대리점카드 업무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은행”의 가맹점 표준약관에 우선한다.

### 제 3 조 (카드의 발급)

1. “은행”은 “판매기업”의 대리점 또는 거래처 중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판매기업”이 카드발급을 추천하는 구매기업에 한하여 카드를 발급한다.
2.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카드발급신청서에 추천의사를 기재하여 “은행”에게 제출하며, “은행”은 동 구매기업에 대하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상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를 발급한다.

### 제 4 조 (카드의 이용)

1. 카드의 이용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한정하며 은행의 카드실물발급은 생략한다.
2. “판매기업”은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판매대금 결제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은행이 판매대금 결제정보를 수락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한 업무처리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3. 구매기업에 대한 카드 이용한도의 조정, 카드 사용의 일시중단,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의 거래계약의 해지로 인한 카드사용 중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판매기업”은 이를 “은행”앞 요청하고 “은행”은 접수 즉시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구매기업의 카드제시 및 서명, 거래승인 등은 생략한다. 이 경우 거래의 진위 및 본인사용 여부의 확인은 “판매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5. 구매기업이 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탈퇴를 “은행”에게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판매기업”에게 서면 통보하고 구매기업의 미결제잔액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정지 또는 탈퇴한다.

### 제 5 조 (연회비)

“은행”은 구매기업의 카드 연회비를 면제한다.

### 제 6 조 (대금의 결제)

1. 구매기업은 약정된 결제일에 약정된 결제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한다.
2. 결제계좌는 구매기업과 “은행”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구매기업의 결제일은 “판매기업”이 “은행”에게 판매대금 결제정보 제출시 매출건별로 지정 통보하기로 한다.

### 제 7 조 (할부판매)

1.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하여 은행이 부여하는 할부기간 내에서 할부판매를 할 수 있다.

2.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소정의 할부수수료를 징구하며, 첫 할부결제일의 할부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3.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할부수수료를 “은행”앞 지급하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은행이 허용하는 기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 8 조 (대금의 지급)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을 매출내역(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과 함께 “은행”에게 제출하고 “은행”은 접수일 익영업일에 “판매기업”에게 그 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매출대금 선지급청구시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매출전표는 “은행”이 제작한 양식으로 한다. 또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 거래가 비반복적인 1회성 거래인 경우 “판매기업”은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기업별 매입 요청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판매기업”은 서면에 의한 매출대금 청구시에도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은행”은 “판매기업”이 요구한 매출대금 중 소정의 선지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지급한다.

## 제 9 조 (연체채권의 처리 - 대금의 반환)

1.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정상적인 대금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정 결제일로부터 **2개월(연체 3회차)**을 초과하여 연체하였거나 신용회복(채무조정신청),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한 경우 부정거래여부, 연체사유 기타 사정을 불문하고 “은행”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해당 구매기업에 대한 미결제잔액 상당액을 “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위 1항에서 언급한 미결제잔액 상당액을 매월 1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확정하여 “판매기업”에게 통보하고, “판매기업”은 반환 대상 확정일로부터 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이내 “은행”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은행”은 동 금액을 연체로써 관리한다.
3. “은행”은 “판매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반환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다.
4. “은행”이 “판매기업”로부터 반환대금을 받은 이후에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을 “판매기업”에게 즉시 지급한다.
5. “판매기업”이 대금의 반환기일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소정의 연체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
6. “판매기업”이 위 1항의 대금의 반환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입취소 요청이 접수될 경우, “은행”은 위 3항의 반환보증금을 사용하여 대금반환을 실행하거나 매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10 조 (거래정보교환)

1. 본 약관과 관련한 카드사용대금 명세의 전송, 대금지급 청구, 반환 등 모든 거래정보의 교환은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인터넷시스템을 통한 전자적방식 또는 서면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은행”은 회원신규 및 등록내용 변경, 대금지급, 구매기업연체 및 반환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판매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판매기업”은 제 4조 2항의 판매대금 결제정보의 제공 이외에, “은행”이 필요로 하는 구매기업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3. “판매기업” 및 “은행”은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서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제 11 조 (회원 가입신청서 등의 수취)

“판매기업”은 “은행”을 대신하여 대리점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및 회원정보 변경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판매기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구매기업 본인이 신청함을 확인하여 “은행”에게 제출한다.

## 제 12 조 (의무이행능력)

(주)한국씨티은행

CR-A-725 (2024.03) 심의번호 2403-04-047 (2024.03.18)

“판매기업”은 대리점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제 9조에서 언급한 대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고, 그 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의 장부가액이나 공정가액 모두 부채가액(이자가 부리되는 채무를 의미하며, 순자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상회함을 확인한다.

### 제 13 조 (중대하고 불리한 변경의 부존재)

“판매기업”은 대리점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판매기업” 재무제표가 그 시기에 종료된 “판매기업”의 회계년도에 대한 재정상태와 영업결과를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일치하고, 그 날 이후 재정상태나 영업에 관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다.

### 제 14 조 (소송 관련 확인)

1. “판매기업”은 대리점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판매기업”의 경영, 재산 및 재무상황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행정사건 또는 중재사건이 “판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이거나 또는 제기될 우려가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판매기업”은 “판매기업”의 “판매기업”의 경영, 재산 및 재무상황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행정사건 또는 중재사건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제 15조 (확인사항의 재확인)

“판매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다른 여신을 추가로 받는 경우, 그 추가 여신 약정을 하는 시점에 동 약관상의 모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동 약관상의 확인사항에 언급된 “판매기업”의 재무제표는 이를 재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판매기업”의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제 16 조 (책임범위)

1. “은행”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은행”의 과실 또는 고의적 부당행위로 인하여 “판매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의 의무를 다한다.
2. “판매기업”의 직원이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기업”이, “은행”의 직원이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진다.
3. “은행”은 폭동, 화재, 홍수, 파업, 법규상의 제한, 천재지변 등 “은행”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발생하는 기계 고장 또는 파괴 행위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손실, 이익의 상실 및 기타 특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4. “은행”은 본 약관과 관련된 다른 “은행”의 과실 및 태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판매기업”과 “은행”은 간접, 우발 또는 특별손해 및 손실(기대이익의 상실을 포함)에 대하여는 비록 손실이나 손해 가능성을 통지 받았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7 조 (손해배상)

“판매기업” 또는 “은행” 어느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8 조 (적용기간)

1. 이 계약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판매기업”이나 “은행”은 30 일 이전에 서면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해지 후 “판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매기업”은 계약해지 후 30일 이내에 “은행”에게 다음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대금 = “판매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대금 중 아직 구매기업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 - 미경과 선지급수수료

4. 제3항에 따른 대금반환이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및 그에 대한 담보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 제 19 조 (비밀유지)

“판매기업”과 “은행”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 있는 자는 손해배상 및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 20 조 (계약의 변경)

1. 대리점카드 업무약관이 변경될 경우, “은행”은 적용 만 1개월 이전에 “판매기업”앞 동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2. “판매기업”과 “은행”간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3. 상기 1항 및 2항의 경우,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 변경내용이 적용되도록 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상호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변경된 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기업”이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면책시키기로 한다.

####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상의 해석에 이견이 생긴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 제 22 조 (일반약관 및 준거법)

이 약관은 “은행”의 가맹점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대한민국 해당 법령에 의거 규율되고 해석된다.

#### 제 23 조 (관할의 합의)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 의견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상호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